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8
----------	-----

제출년월일 : 1999.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주차장법이 개정(1999.2.8 법률제5,902호)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규정을 폐지하는등 규제관련 조문의 정비와 함께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산금조항을 규정하는것임

☐ 주요골자

가. 민간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하도록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을 거절하는자등 의무위반자에 대한 가산금규정 명시(안제3조)

나. 민간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설치신고의무규정을 삭제함(안제13조)

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제공할때에 신고의무규정을 삭제함(안제25조)

라.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함(안별표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법제7조제1항및법제12조제1항”을 “법제9조제2항및법제14조제2항”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를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제3항중 “노외주차장 설치자”를 “공영주차장 관리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 “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용자를 받을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제5항중 “10대당 1면이상”을 “40대당 1면이상”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부대시설 설치범위)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편익시설 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람집회시설, 관공휴게시설, 업무시설
2.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3.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 내지 [별표 4]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안)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급 지	1회 주차권		1 일 주차권	월 정 기 권		비 고
		최 초 30분까지	30분초과후 매10분마다		주 간	야 간	
노 상 주차장	1급지	900원	500원	-	-	-	1구획 초과시에는 그 점용구획의 수 에 따라주차 요금 을 징수한다.
	2급지	600원	300원	-	-	-	
	3급지	500원	200원	-	-	-	
노 외 주차장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80,000원	6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6,000원	70,000원	50,000원	
	3급지	200원	100원	2,000원	25,000원	20,000원	

- 비 고 -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 ~ 10월 : 09:00 ~ 19:00
 - 나. 11월 ~ 3월 : 09:00 ~ 18:00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가. 1급지 : 금촌1동, 금촌2동의 도시계획내 상업지역 및 주차장정비 지구로 지정된 지역(노외주차장에 적용)
 - 나. 2급지 : 금촌1동, 금촌2동,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탄현면, 조리면, 광탄면, 적성면의 도시계획구역내(노상.노외주차장에 적용)
 - 다. 3급지 : 기타지역 및 역과 전철역의 광장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은 인정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 할 수 있다.(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 노상주차장은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별표 2]

무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9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 락 시 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격리병원을 제외한다),운동시설 (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 제 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200㎡ 초과인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15인당 1대 관람장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서의 시설물	상기 시설물용도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징금 부과 기준

(제26조 관련)

(단위:만원)

위 반 내 용	과 징 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	50
2.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제17조제2항 관련)	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	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	50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4)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2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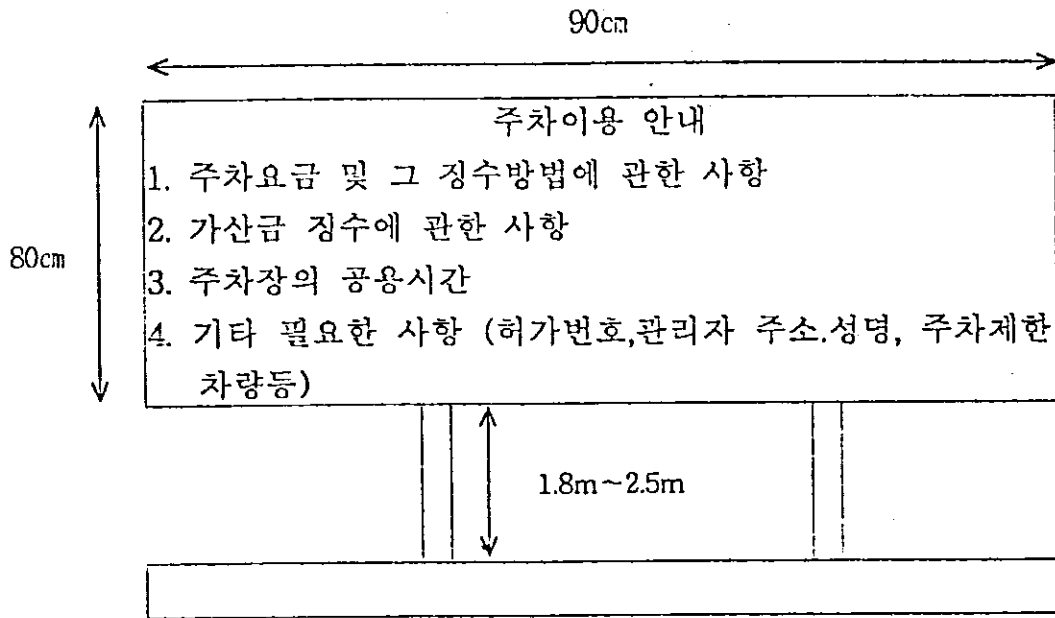
(단위:만원)

위 반 행 위 별	과태료
1. 안전도인정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제19조의7제2항 관련)	10
2.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 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제19조의10제2항 관련)	10
3.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제25조제1항 관련)	10
-비 고- 시장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비고-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 씨 (고 덕)
노 상 주 차 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및 가산금)①법제7조제1항 및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 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 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⑥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제3조(주차요금및 가산금)①법제9조제2항 및법제14조제2항의 ----- -----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법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 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장표지)① - ②(생 략)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표지)① - ②(현행과 같음) ③공영주차장 관리자는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후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u> <u>②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시장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에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u>	(삭제)
<u>제13조(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①법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하 “신고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u> <u>1.주차대수 40대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것.</u> <u>2.대상토지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것.(다만, 녹지지역내에서는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경우에 한함).</u>	(삭제)

현행	개정안
3.시행규칙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제1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등)법제12조제1항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①법제 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제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주차장설치심의등)법제12조제1항에 ----- -----검토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①--- ----- -----입체식 (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 ④ (생 략) ⑤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0대당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제24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 -----40대당 1면이상 ----- --.
제2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①법제 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 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 용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 을 받아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배치도(일반이용 부분 표시)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의 교통상황 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3. 토지의 지면,지목및 면적을 기재한 조 서 (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면적, 건축연면적,건축물의 용도, 층수및 높이 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 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5.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따 른 관리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한	(삭 제)

현행	개정안
관리규정. 이 경우 노외를 부설로 본다)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제1항 제5호의 관리규정에 의한 관리비(주차요금)를 징수할 수 있다. ④법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차장의 종류와 규모,이용시간,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류 : 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주차장법시행령제11조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도 이를 적용한다. 2. 규모 : 총주차대수 10대이상 건물로 당해시설물의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다. 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주차요금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법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의한 당해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한다. 4.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노외주차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8조(부대시설범위)시행규칙제6조제4항 4호의 이용자 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u> <u>1. 관람집회시설,관공휴게시설,업무시설</u> <u>2. 제1,2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u> <u>3. 자동차관련시설</u>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급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비고	구분	급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비고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후 매10분마다		주간	야간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후 매10분마다		주간	야간	
노상주차장	1급지	900원	500원	-	-	-	1구획 초파시에는	노상주차장	1급지	900원	500원	-	-	-	1구획 초파시에는
	2급지	600원	300원	-	-	-	그정용구획외수에		2급지	600원	300원	-	-	-	그정용구획외수에
	3급지	500원	200원	-	-	-	따라주차요금율정수한다.		3급지	500원	200원	-	-	-	따라주차요금율정수한다.
	4급지	200원	100원	-	-	-			(삭제)						
노외주차장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80,000원	60,000원		노외주차장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80,000원	6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6,000원	70,000원	5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6,000원	70,000원	50,000원	
	3급지	200원	100원	2,000원	25,000원	20,000원			3급지	200원	100원	2,000원	25,000원	20,000원	
- 비고 -								- 비고 -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9:00 ~ 19:00 나. 11월 ~ 3월 : 09:00 ~ 18:0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기타지역 라. 4급지 : 역과 전철역의 광장주차장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3급지 : 기타지역 및 역과 전철역의 광장주차장							
4. 노상주차장의 1일주차권,월정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이상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 할 수 있다(신설)								4. 노상주차장의 1일주차권,월정기주차권은 인정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 100퍼센트를 가산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감면할 수 있다)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 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1대+부대운동시설별산정대수+기타부대 시설면적40m'당 1대
	기 타	시설면적80m'당 1대
의료 시설	중 합 병 원	3병상당1대로 산정한대 수와 시설면적100m' 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20m'당 1대
운동 시설	골 프 장	1홀당 12대
	골 프 연 습 장	1타석당 1대
	옥 외 수 영 장	정원 12인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20m'당 1대
관람 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80인당 1대
	예 식 장	시설면적 30m'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80m'당 1대
판매 시설	백화점,쇼핑센터	시설면적 50m'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60m'당 1대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 한다)	유흥 음식점	시설면적 30m'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50m'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80m'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 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 냉장 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m'당 1대
근 름 생 활 시 설		시설면적 200m'당 1대
단 독 주 택		건축연면적 180m' 초과 150m' 이하는 1대. 건축 연면적 150m' 초과인 경우는 1대에 200m'를 초과하는 130m'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
공 동 주 택		건축연면적 80m'당 1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 타 건 축 물		시설면적 200m'당 1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 준농림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유흥음식점, 공동주택, 준도시 지역안에서의 주택		상기 시설물 용도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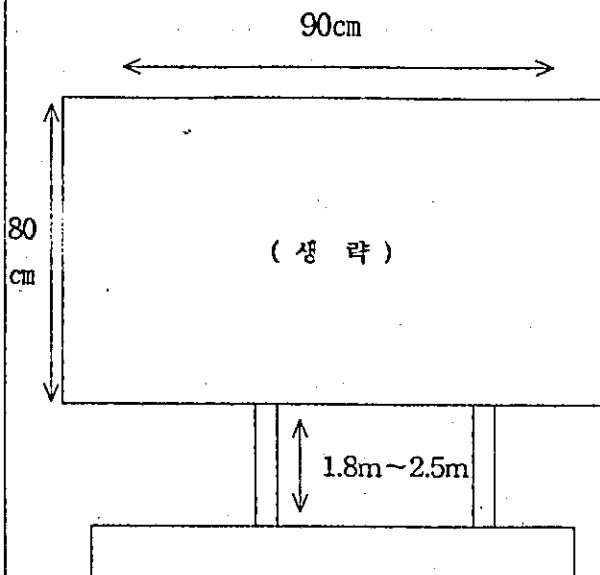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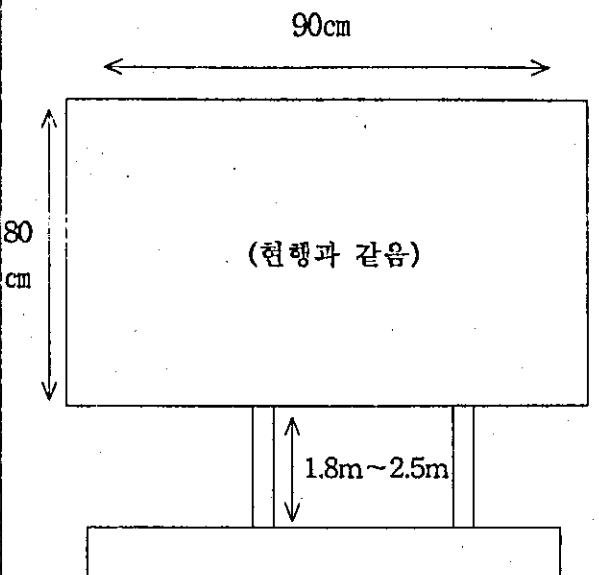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 락 시 설	시설면적 100m'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m'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m'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m'초과 200m'이하인 1대 200m' 초과인 경우는 1대에 200m'를 초과하는 130m'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m'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15인당 1대 관람장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m'당 1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에서의 시설물	상기 시설물 용도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3] 과징금 부과 기준 (제26조 관련) (단위: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내용</th><th>과징금</th></tr> </thead> <tbody> <tr> <td>1.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td><td>250</td></tr> <tr> <td>2.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td><td>100</td></tr> <tr> <td>3.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td><td>50</td></tr> <tr> <td>4.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때 (법제17조제2항 관련)</td><td>50</td></tr> <tr> <td>5.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제18조제1항 관련)</td><td>50</td></tr> <tr> <td>6.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td><td>50</td></tr> <tr> <td>7.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td><td>50</td></tr> <tr> <td colspan="2">(신설)</td></tr> </tbody> </table>	위반내용	과징금	1.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	250	2.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	100	3.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	50	4.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때 (법제17조제2항 관련)	50	5.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제18조제1항 관련)	50	6.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	50	7.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	50	(신설)		[별표3] 과징금 부과 기준 (제26조 관련) (단위: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내용</th><th>과징금</th></tr> </thead> <tbody> <tr> <td>(삭제)</td><td>(삭제)</td></tr> <tr> <td>(삭제)</td><td>(삭제)</td></tr> <tr> <td>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td><td>50</td></tr> <tr> <td>2.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제17조제2항 관련)</td><td>50</td></tr> <tr> <td>(삭제)</td><td>(삭제)</td></tr> <tr> <td>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td><td>50</td></tr> <tr> <td>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td><td>50</td></tr> <tr> <td colspan="2">-비고-: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td></tr> </tbody> </table>	위반내용	과징금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	50	2.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제17조제2항 관련)	50	(삭제)	(삭제)	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	50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	50	-비고-: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반내용	과징금																																				
1.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게시한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	250																																				
2.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법제15조제2항 관련)	100																																				
3.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	50																																				
4.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 한때 (법제17조제2항 관련)	50																																				
5.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제18조제1항 관련)	50																																				
6.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	50																																				
7.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	50																																				
(신설)																																					
위반내용	과징금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제1항 관련)	50																																				
2.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제17조제2항 관련)	50																																				
(삭제)	(삭제)																																				
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제3항 관련)	50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법제25조제1항 관련)	50																																				
-비고-: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4) <u>과태료부과기준</u>			(별표4) <u>과태료부과기준</u>		
(제27조 관련) (단위:만원)			(제27조 관련) (단위:만원)		
위반행위별	(구분)	과태료	위반행위별	(삭제)	과태료
1.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 주차장을 설치한 자(법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 관련)	바닥면적500㎡미만	90	(삭제)	(삭제)	(삭제)
	바닥면적500㎡미만	100		(삭제)	(삭제)
2.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 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 지한 자(법 제16조 관련)	허가주차장	50	(삭제)	(삭제)	(삭제)
	신고주차장	40		(삭제)	(삭제)
(신설)	(신설)		1. 안전도인정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제19조의7제2항 관련) 10		
(신설)	(신설)		2.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0 (법제19조의10제2항 관련)		
(신설)	(신설)		3.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0 (법제25조제1항 관련)		
-비고- (생략)			-비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 비교 -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	주차장	(생	략)				
공영	노외주차장	(생	략)				
민영	노외주차장	알루미늄판		청	색	흰	색
(별지7호 서식)				(삭 제)			